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8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김태년 · 김한규 · 박희승
맹성규 · 이훈기 · 홍기원
김태선 · 김영배 · 박균택
염태영 · 손명수 · 박홍근
전진숙 · 조계원 · 최혁진
김 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 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환경 · 사회 · 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 구조(ESG)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신설하고,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의 ESG 성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0조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를,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으로 한다.

제1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측정보”를 “예측정보(제159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이후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생략)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 ⑦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 사회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제160조(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 ----- ----- ----- ----- ----- ----- -----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
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
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
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
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
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
3호의2는 제외한다)·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생략)

② 예측정보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illegible]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5호를, 분
기보고서-----제3호, 제3호
의2 및 제5호를 각각-----.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측 정보(제159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_____.

할 때에 예측정보 중 중요사항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 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